

1. 건설근로자공제회

1. 사업 목적

- 건설근로자 가정의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건설근로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29백만 원(100만 원 × 529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입력 항목임
 -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 →나의 정보조회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8.24.)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529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의 자녀* > 고학년** > 성적상위자 >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많은 자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많은 자 > 연소자

*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가 소지하여야 하며, 기부처 최종 확인

** 4학년 이상은 모두 4학년으로 간주함

제출서류: 없음

※ 건설근로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2. 국민연금공단

1. 사업 목적

- 국민연금 수급자, 수급자의 자녀 중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50백만 원(150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취약계층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 노령연금 수급자 자녀
 -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내역(가구원)에 반드시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장애일시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수령자 및 그 자녀의 경우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 ※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100명
 - ※ [참고1] 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약 1.5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1차 및 2차 지역별 선발인원 적용(최종 2차 선발 시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2차 심사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자기소개서 심사 2인: 기부처 1인 및 재단 위촉 1인(내부 또는 외부) 심사 (블라인드 심사 진행 예정)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마감일 기준 지급내역 있는 경우, 수급자 인정 가능

※ 수급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팩스·우편) 등을 통해서 발급 가능, 연금수급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푸른등대 국민연금공단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인원**

지역 구분	1차 선발인원(명)	최종 선발인원(명)
서울	33	22
부산	14	9
대구	6	4
인천	5	3
광주	6	4
대전	8	5
울산	2	1
세종	2	1
경기	26	17
강원	6	4
충북	6	4
충남	11	7
전북	6	4
전남	5	3
경북	11	7
경남	6	4
제주	2	1
합 계	155	100

※ 행정구역별 국내 4년제 및 전문대학 재적학생 비율 반영하여 배정

※ 지역구분은 대학소재지 기준 적용

※ 최종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2차 심사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참고 2**자기소개서**○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1.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500자 이내)**

- ※ 유족·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 가족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 기술
- ※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

2.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

-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 ※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

3.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1. 사업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장학금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12백만 원(100만 원 × 206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자(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실직자* 가정**의 대학생
 - * (상시근로자) 2020년 2월 23일(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으로 격상일자) 이후 1개월 이상 실직 이력이 있는 자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2021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48일 이상이고,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일용근무일수가 ('21년 6월~'21년 11월 대비) 24일 이상 감소하여야 함
 - ** 제출서류 상 실직자가 부 또는 모이어야 하며, 실직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함
 - ※ 푸른등대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206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2학기 ~ '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다자녀 가정 > 금융·보험전공*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학과명에 '금융' 또는 '보험' 단어가 포함된 자

□ 제출서류

-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 실직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전체 이력 제출 필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경우 제출(전체 이력 제출 필수)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4. 작가 하시시박 X T.P.Z.

※ 산업디자인과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미술계열 전공 대학생의 생활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4백만 원(200만 원 × 7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학생 중 미술 전공** 재학생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본인이거나, 미혼자는 부 또는 모, 기혼자는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인정
 - ** 학과명에 '미술' 또는 '예술' 또는 '디자인' 단어가 포함된 자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7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5. 한국가스공사

1. 사업 목적

- 에너지 전공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생활비 지원으로 안정적 학업 여건 조성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60백만 원(200만 원 × 8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내인 에너지 전공자
 -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 에너지 전공자 기준: 신청자 학과명에 '에너지, 기계, 전기, 화공, 토목, 건축, 전산, 자원, 지질' 단어가 포함된 자
 - ※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8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 [참고]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참조(대학소재지 기준)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산점*(1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주거시설이 월세, 하숙집, 고시원인 자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 주거시설이 월세, 하숙집, 고시원인 경우 가산점 부여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 단, 신청시작일('22.6.15.)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참고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
- ※ [참고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 본인이 아닌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심사 사항

-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 ④ '22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2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 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푸른등대 한국가스공사 기부장학금 지역별 선발 인원

권역	장학생 선발 기준 지역 (대학 소재지 기준)	선발인원(명)
대경권, 강원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16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16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도	16
호남권, 제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도, 제주도	16
동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6
합 계		80

※ 지역별 선발인원이 미충족 될 경우 기부처와 협의하여 미충족 인원은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참고 2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길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2-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월세(기숙사, 고시원, 주택 등) 전세 기타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본인 부친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00시 00구 00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00시 00구 00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 임차 증빙 서류는 선발예정자의 1.2배 내외 인원에게 별도로 요청할 예정이며, 서류 적격 확인 및 평가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등)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____ 월 ____ 일

신청자 : _____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참고 3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p>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확인자 (하숙집 · 고시원 주인) 주 소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4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기숙사 **관장 (직인)**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6. 한국교직원공제회(유형 I)

1. 사업 목적

-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의 생활비 지원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40백만 원(200만 원 × 7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국 사범(교육, 교원)대학 재학생
 - ※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진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사범대, 교육대, 교원대 재학생
 - ※ 단, 일반대학 교직이수과정 재학생은 제외함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7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7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 사업 목적

- 산업재해 근로자의 자녀 중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6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재(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산업재해 사망자 자녀 또는 장해등급 1~7급 판정 근로자 자녀
 - ※ 푸른등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2학기 ~ '23년 1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 산업재해사망자 > 산업재해 장해등급 고등급자 (1급→7급 순) >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등의 다른 증빙 서류로 대체 불가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8. 한국토지주택공사(LH)

1. 사업 목적

- 임대주택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02백만 원(200만 원 × 51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1)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인 경우
 - 2)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 ① (미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 인정
 - ② (기혼자)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배우자인 경우 인정
 - ※ LH 임대주택여부(계약자명, 계약자 주민등록번호, 계약자 핸드폰번호, 신청자 거주지 주소의 LH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 기부처 최종 확인
 -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LH 임대주택의 계약자가 장학금 신청자 본인이 아닌 경우, 계약자인 부 또는 모(기혼자인 경우, 배우자)가 LH 임대주택에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거주중이어야 함
 -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신청 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확인될 경우, 거주 중으로 간주), 신청기간 내 LH 임대주택 계약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푸른등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인원: 51명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본인 명의 주민등록등본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본인이 아닌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9. 홈앤쇼핑 홈앤스마일(유형 II)

1. 사업 목적

-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43백만 원(100만 원 × 43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직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 ① 택배업*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 *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에 소속된 택배기사
 - **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하고(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퇴직 또는 휴직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
 - 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
 -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기간을 합쳐야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하는 회사의 재직정보 모두 종사확인서(참고)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
 -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참고)를 기준으로 재직여부 및 1년 이상 종사여부 확인(기부처 확인)
 - ※ 장학금 신청자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신청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택배기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② ①의 해당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하인 자
 - ※ 푸른등대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43명
- 지원내용: 학기당 1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다자녀 가정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 ※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홈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홈쇼핑 택배업 종사확인서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택배기사 인적 사항	① 성명	이 푸 른		②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111111-1*****
	③ 연락처	010-0000-0000		④ 장학금 신청자와의 관계	부
	⑤ 이메일	SSS@RRR.go.kr			
	⑥ 주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택배업 재직 정보	택배사명	⑦ 소속 택배사	⑧ 택배기사 사번 (정확한 기재 필수)	⑨ 근무기간(하단의 '작성 시 참고 사항' 확인)
CJ대한통운		✓	12345	2021.08.20. ~ 2022.08.24.(심사기준일)	
롯데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	67890	2020.03.01. ~ 2021.7.15.	
장학금 신청자 인적 사항	성명	김 초 록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222222-2*****
	연락처	010-0000-0000		종사자와 관계	자녀
	주소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X			
	학교명	대한대학교		전공	경영학과
	학번	2021XXX		이메일	SSS@RRR.go.kr
<p>상기 본인은 홈쇼핑 택배업 종사자(택배기사) 본인 또는 자녀이며,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학금 신청자명 : 김 초 록 (서명 또는 인)</p> <p>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p>					
<p>< 작성 시 참고 사항 ></p> <p>⑦ CJ대한통운,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택배 3사 중 택배기사 본인이 소속된 택배사에 체크</p> <p>⑧ 택배기사 본인의 사번 기재, 재직여부 및 재직기간 확인을 위하여 정확한 기재 필수</p> <p>⑨ 현재 소속되어 있는 택배사에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22.8.24.(수)(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까지 기재</p> <p>※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 재직 중임이 확인되어야 하고(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8.24.(수)) 기준 퇴직 또는 휴직상태인 경우 선발 제외),</p> <p>2)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8.24.(수)) 기준 1년 이상 재직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자격 충족</p> <p>- CJ대한통운, 롯데택배, 한진택배 중 2개 사 이상의 근무기간을 합쳐야 재직기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하는 회사의 재직정보 모두 작성하고 근무 기간 확인될 경우 합산하여 기간 산정 가능(재직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인정)</p>					

10. DGB사회공헌재단

1. 사업 목적

- 경북·강원 지역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강릉, 동해, 삼척)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비 지원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52백만 원(200만 원 × 26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경북·강원 지역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 지역**(경북 울진, 강원 강릉, 동해, 삼척)의 **산불 피해 가정***의 대학생
 - *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 이어야 하며, 피해사실확인서 상 피해자가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 이어야 함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6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10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피해사실확인서***
 - 심사 사항: 피해사실확인서의 ①피해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또는 본인이어야 하며, ②피해자의 주소는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강릉, 동해, 삼척)이어야 함. ③피해 일시는 동해안 산불 기간(최초

발생일 2022. 3. 4. ~ 주불 진화일 2022. 3. 13.)에 해당 되어야 함

- ※ 피해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미혼), 배우자(기혼)일 경우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을 방문하여 발급하며, 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11. KDB산업은행

1.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소상공인 가정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총 200백만 원(200만 원 × 10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사실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 소상공인* 가정**의 대학생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 (참고1)
 - **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참고2) 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 푸른등대 KDB나눔재단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총 10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신규발급의 경우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 '22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중소기업 확인서 상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 소상공인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름

참고 1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희주점업
56212	무도유희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표준산업분류	업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준함

참고 2

소상공인확인서 양식

중소기업 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소 :

주업종 :

유효기간 :

용도 :

위 기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인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주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내의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

※ 소상공인 확인서 상 대표자명은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 '22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소상공인 확인서 상 유효기간이 포함되면 인정

12. KOSAF기부펀드(유형 I)

1. 사업 목적

-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생활비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160백만 원(200만 원 × 40명 × 2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재(졸)업학기자 제외
- 신청자격: 가정 외 보호시설* 보호종결 또는 연장보호 중이며 학자금 지원구간 2구간 이하인 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이동을 보호하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시설인 경우 지원 가능(일시보호시설 및 청소년쉼터, 부모동반시설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 계속장학생 기준도 선발 성적기준과 동일함
- 지원인원: 40명
- 지원내용: 학기당 20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2개 학기('22년 2학기 ~ '23년 1학기)
- 평가기준
 - (1차)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2배수 선발
 - (2차) 자기소개서(100점)
 - ※ 심사위원: 한국장학재단 추천 2인 심사(내부 또는 외부)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동점자 처리기준은 1차, 2차 심사에 모두 적용

□ 제출서류: 가정 외 보호 사실 증명서*

* 입소확인서, 재원증명서, 출신확인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택 1)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참고

자기소개서

○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KOSAF기부펀드(유형 I)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13. KOSAF기부펀드(유형 II)

1. 사업 목적

- KOSAF기부펀드의 기부금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KOSAF기부펀드의 재원은 기부장학금 명칭이 별도 부여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사업 종료 후 잔액 포함)의 기부금으로 조성됨

2. 사업 내용

- 지원규모: 30백만 원(150만 원 × 20명 × 1개 학기)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 신·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 신청자격: 소속대학 인근* 주거시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3구간 이하인 자
 - * 소속대학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시·군일 경우 지원
 - ** 기숙사, 전월세 원룸, 하숙집, 고시원 등(단, 한국장학재단 연합기숙사 및 창업지원형 기숙사 제외)
 - ※ KOSAF기부펀드II유형 기 수혜자 제외(재단 확인)
- 성적기준: 직전 정규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 지원인원: 20명
- 지원내용: 학기당 150만 원 지원(생활비 무상보조로 정액 지원)
- 지원기간: 1개 학기('22년 2학기)
- 평가기준: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평가 점수 높은 순
 - 동점자 처리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성적상위자 > 연소자
- 제출서류: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 ※ 단, 신청시작일('22.6.15.)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참고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
 - ※ [참고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 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상세)

○ 전(월세) 주거 유형: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주택일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서 제출 필요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유형: 입실확인서** 1부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대학생(신청자 본인)에 한함

※ 단,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본인이 아닌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 심사 사항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 가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발 예정)

④ '22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2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 계약이 연장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비고: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

참고 1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인적사항

- 이 름 : **홍길동**
- 소속대학 : **기부장학대학교**
- 학 과 : **장학학과**

○ '22-2학기 대학생 본인 주거지에 대해 아래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사항 포함)**

1. 임차유형(택 1)

- 월세(기숙사, 고시원, 주택 등) 전세 기타 ()

2. 월 주거(예상) 비용(택 1)

- 20만 원 미만 20만 원 이상 ~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 학기/연간 등 일정기간 계약일 경우 월 금액으로 환산하여 기재

3. 임대차계약서(입실확인서 등)의 임차인(택 1)

- 대학생 본인이 미혼일 경우: 본인 부친 모친
- 대학생 본인이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4. 기타사항

- 대학생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 **00시 00구 00로**예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 임대차계약서 주소(예정포함): **00시 00구 00로**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 임대차계약서 계약기간(예정포함): **20xx. xx. xx. ~ 20xx. xx. xx.**

※ 유의사항

- 신청인 본인은 **추후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 불가할 경우 심사 탈락됩니다.**
- * 임차 증빙 서류는 선발예정자의 1.2배 내외 인원에게 별도로 요청할 예정이며, 서류 적격 확인 및 평가 기준(학자금 지원구간, 성적 등)에 따라 최종 선정됩니다.
-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재단의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위 기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____ 월 ____ 일

신청자 : _____ (서명)
 ※ 본인 서명 후, 스캔하거나 사진파일로 제출

참고 2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예시)

하숙집 · 고시원 확인서

1. 하숙집 · 고시원 주인(임대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590415 - 2(예시)		
2. 학생(임차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주소	연락처
	920319 - 1(예시)		
3. 하숙(입실) 현황			
하숙(입실)기간	년 월 일 ~ 현재		
총 하숙비(입실료)	월금 총 원	숙박비(입실료)	월금 원
		식대	월금 원
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 고시원에 하숙(입실)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하숙집 · 고시원 주인)		주소 :	
		성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비고	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 임차계약서, 재산세납부영수증,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목적에 맞게 양식(내용)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3 **기숙사 입주확인서 (예시)**

(제20 - 호)

○○○○○기숙사
입 주 확 인 서

성 명		학 교 명	
호 실	관 호	연 락 처	

상기 학생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기숙사에 거주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기숙사 관장 (직인)

붙임1

기부처별 추가 제출서류

기부처	제출서류	
1. 건설근로자공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 건설근로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2. 국민건강보험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3.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아래 2개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일용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 <p>※ 실직자가 부 또는 모이어야 하며 실직자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함</p> <p>※ 실직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p> <p>*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가능(전체이력 제출 필수)</p> <p>** 국민건강보험공단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급 가능(전체이력 제출 필수)</p> <p>***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발급 가능(전체이력 제출 필수)</p>
4. 작가 하시시박 X T.P.Z.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없음 	

기부처	제출서류
<p>5. 한국가스공사</p>	<p style="text-align: center;">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원룸형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이 아닌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②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에 한함 ②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심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가능 ④ '22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종료일이 '22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 연장 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작일('22. 6. 15.)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기부처	제출서류	
6. 한국교직원공제회 유형 I	● 제출서류 없음	
7.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발급 가능 ※ 산업재해 보상보험연금증서 등 다른 서류 인정 불가 ※ 산업재해 근로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8.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본인이 아닌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9. 홈앤쇼핑 홈스마일 유형 II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앤쇼핑 택배업 종사 확인서 ※ 택배기사 사번 명확히 작성 ※ 택배기사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10. DGB사회 공헌재단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실확인서*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에서 발급 가능 ※ 심사사항 ① 피해자는 본인 또는 부·모(미혼), 배우자(기혼)이어야 함 ② 피해자의 주소는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강릉·동해·삼척)이어야 함 ③ 피해 일시는 동해안 산불 기간(최초 발생일 2022. 3. 4.~ 주불 진화일 2022. 3. 13.)에 해당 되어야 함 ※ 피해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미혼), 배우자(기혼)일 경우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11. KDB산업은행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http://sminfo.mss.go.kr) ● 사업자등록증명 ※ 사업자등록증 인정 불가 ※ 소상공인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기부처	제출서류	
12. KOSAF기부펀드 유형 I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외 보호사실 증명서(아래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확인서 - 재원증명서 - 출신확인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13. KOSAF기부펀드 유형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시설 임차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원룸형태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대차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미혼) 본인 또는 부모, (기혼) 본인 또는 배우자 ※ 본인이 아닌 계약자의 가족관계는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22-2학기 기준 정보로 심사함 ②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확인서의 임차인 인정 범위: 신청자 본인에 한함 ② 기숙사, 하숙집(고시원 등)의 사업자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제출 불필요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참조) ※ 심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소속대학 주소가 동일(시·군 기준)해야 함 ②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대학생 본인이 아닌 경우 해당 임차인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가구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한 대학생 단독세대*이거나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본가에 주소를 둔 채 전입신고하지 않은 대학생일 경우 지원가능 ④ '22년도 2학기 학업을 위한 지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종료일이 '22년 12월 1일 이후일 경우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이 연장 된 경우 연장됨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필요 * 대학생 명의 등본 상 부, 모친이 미등재된 형태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시작일('22. 6. 15.) 기준 임차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원형 기부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선발예정자인 경우 주거시설 임차 증빙서류 요청 예정(미제출 시 탈락 처리 예정)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2022. 6. 15.)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

- ※ 기부처별 제출 서류는 장학금 신청 기간 종료 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
- ※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처 직인, 페이지 전체, 신청 시작일(2022. 6. 15.) 기준 1개월 이내 발급일이 확인되는 출력 및 스캔본만 인정(컴퓨터 화면 캡처 인정 불가)
- ※ 장학금 신청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및 연계 동의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없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심사함

참조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절차

절차 ① 장학금 신청화면(개인정보 제공 및 약관 동의)

The screenshot shows the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Personal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Use, Provision, and Inquiry Consent Form) pop-up window. The window contains the following text:

행정정보 이용 동의 여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택적 동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해 귀 재단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행정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귀 재단에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행정정보 제공 이용에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자살위계증확인서, 자살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살위험본인부담감대상자증명서, 건강보험차과확인서, 농림경영채동축확인서 (동축정보 포함), 임업경영채동축확인서, 어업경영채동축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부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 동의로 인한 관련 서비스는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해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2022년 05월 25일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하며 신청서에 필요한
 누락 및 사실 아닌 내용 입력으로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절차 ②

신청서 작성(개별서류 제출)

개별서류 제출

공공 마이데이터	주민등록표(등본) 서류 제출 >
기타서류	[미등록]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찾아보기..."/> <input type="button" value="파일 등록"/>

※ 최대 5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개별서류 제출방법>

1. [개별서류 확인하기]에서 선택한 기부처별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제출서류는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 선택 후 **파일 등록**을 클릭하면 등록됩니다.
3. 첨부파일의 최대 용량은 **10MB**이내만 가능하며, **PDF, ZIP, JPG, HWP** 파일 형태로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파일의 이름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자동으로 바뀝니다.
4. 등록된 파일은 [파일등록완료]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소독 확인 서류 제출방법>

- ※ 학자금 지원기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자상위 증명서' 등은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신청 완료 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정부학자금 통합신청 시 소독 확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류 제출 안내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의미

- 공공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받아 직접 다양한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본인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서류를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붙임2	기부처별 자기소개서
------------	-------------------

국민연금공단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p>1. 국민연금공단 연금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500자 이내)</p> <p>※ 유족·장애연금 또는 노령연금 가족 수급을 통해 도움이 되거나 느낀 점 기술</p> <p>※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p>
<p>2.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500자 이내)</p> <p>※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p> <p>※ 이름, 나이, 학교, 출신지 등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 작성 불가</p>

KOSAF기부펀드 유형 I

평가기준

항목	진솔성	논리성	성실성	성장가능성	목적부합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점수						

채점기준

채점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18	17~15	14~12	11~9	8~5

자기소개서 작성 항목

1. 자기소개 (성장 과정 및 가치관 등)(500자 이내)
2. “푸른등대 KOSAF기부펀드(유형 I) 기부장학금” 지원 동기(500자 이내)
3. 진로 목표 및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1,000자 이내) ※ 어학성적, 자격증 취득, 수상실적 포함
4.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과 계획(500자 이내) ※ 봉사활동 실적 포함
5. 자유기재(500자 이내) ※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과 역량 등을 자유롭게 기술

붙임3

2022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2022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업무처리기준

2022. 6.

인 재 육 성 장 학 부

I 사업 개요

1. 목적

- 기부자의 숭고한 기부 취지를 반영한 장학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대학생 대상 학자금 지원으로 교육 지원의 다각화 및 미래우수인재 양성에 기여

2. 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제20조(기부금의 모집·접수)
- 「기부금품 조성 및 운영규칙」 제15조(기부금품 운영위원회)

① 기부금품 제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재단에 기부금품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품 활용 사업 계획

3. 추진 일정

업무내용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선발 공고	'22. 6. 7.(화) ~ 6. 28.(화)
장학금 신청 및 서류제출	'22. 6. 15.(수) 09:00 ~ '22. 6. 28.(화) 18:00 (14일 간)
심사자료 준비 (학사정보 입력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22. 6. 29.(수) ~ 8. 23.(화)
장학생 심사	'22. 8. 24.(수) ~ 9월 중순
장학생 선발결과 발표	'22. 9월 중순

※ 상기일정은 신청 현황, 심사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심사 기준일: 심사 시작일(8월 24일(수))

*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

4. '22년 2학기 기부처별 신규장학생 선발 요약표

(단위: 명, 백만 원)

유형	기부처	선발대상	선발인원	심사기준		장학금액 (학기당)	지원기간
				1차 심사	2차 심사 (기부처 맞춤형)		
생활비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529	가계소득(100점)	-	1	1개 학기 ('22-2)
	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	10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자기소개서 (100점)	1.5	1개 학기 ('22-2)
	3.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 가정의 대학생	206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1	2개 학기 ('22-2~'23-1)
	4. 작가 하시시박 X T.P.Z	저소득층 미술 계열 전공 대학생	7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2-2)
	5. 한국가스공사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에너지 전공 대학생	80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가산점(10점)	-	2	1개 학기 ('22-2)
	6. 한국교직원 공제회 유형 I	사범(교원, 교육)대학 저소득층 대학생	7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2-2)
	7.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산업재해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2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1.5	2개 학기 ('22-2~'23-1)
	8.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 임대주택 거주 대학생	51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2	1개 학기 ('22-2)
	9. 홈앤쇼핑 홈앤 스마일 유형 II	택배기사 본인 또는 그 자녀	43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1	1개 학기 ('22-2)
	10. DGB 사회공헌재단	경북·강원지역 산불로 어려움에 처한 특별재난지역 가정 대학생	26	가계소득(100점)	-	2	1개 학기 ('22-2)
	11. KDB산업은행	소상공인 가정의 저소득층 대학생	100	가계소득(50점)+ 성적(50점)	-	2	1개 학기 ('22-2)
	12. KOSAF기부펀드 유형 I	가정 외 보호시설 출신 대학생	4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자기소개서 (100점)	2	2개 학기 ('22-2~'23-1)
	13. KOSAF기부펀드 유형 II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	20	가계소득(60점)+ 성적(40점)	-	1.5	1개 학기 ('22-2)
합 계				-	-	-	-

II 공통 선발 기준

1. 학생 신청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2. 6. 15.(수) 09:00 ~ '22. 6. 28.(화) 18:00까지
 -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서류제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소득확인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 (서류제출) 신청 완료 후 1일~2일(휴일 제외) 후에 누리집에 서류 제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필수·선택서류 제출
 - ※ 확인 경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현황
 - (가구원동의)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 동의 필요
 - ※ 기존 가구원 동의를 한 후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불필요
 - ※ 해당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만 인정, 등록금을 이연한 경우에도 이전 학자금 지원구간 사용 불가
- 기부처별 추가 서류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장학금 신청기간 내 제출

2. 대학 추천

- 대학은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이수 학점, 성적, 학적 등을 반영한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제공 (대학 관리자포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학사정보: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학업 성적 등에 관한 학사정보 자료

- 대학 학사·수납정보 등록 기간 내(심사 이전) 등록 완료
- ※ 학사정보, 학적상태 등에 대한 심사는 심사 시작일 기준 대학에서 업로드한 정보로 심사진행

□ 정보 제공방식

-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을 각각 대학 관리자포털 내 [학사정보관리]와 [수납원장관리]에서 등록
-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수정은 심사 이전 단계까지만 가능

3. 대상자 선정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적용

-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확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장학생 선발 심사 시작일 기준으로 확인된 학자금 지원구간을 심사 시 적용
- ※ 최초 재단 학자금지원 시 적용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 ※ 심사 시작일 기준 최신화 신청 진행 중이거나 심사 시작 기준일 이후 최신화 신청에 의해 변경된 학자금 지원구간은 반영 불가

□ 장학생 심사

- 적격여부가 확인된 학생 중 소득, 성적 및 기부처별 심사(자기 소개서 등) 등을 진행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등록금/생활비 지원 구분 없이 동일 학기에 1개 유형만 수혜 가능
- 동일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간 중복 지원 불가(신규, 계속장학생 전체 해당)
- 1: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기간 동안의 학적 변동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 선발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 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정보를 고의 또는 실수로 미입력(재외국민 특별전형 'N' 입력) 하여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심사 제외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소득재산조사 없이 학자금 지원구간 확정된 경우는 제외 처리

구 분		평가항목
1차	1단계	○ 적격여부 확인: 선발자격조건* 및 서류 확인
	2단계	○ 가계소득 평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성적 평가: 직전학기 대학 성적 평가 -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 100
2차		○ 기부처 요구에 따라 자기소개서 심사 등 진행

* 선발자격조건: 기부처별 신청자격, 성적, 소득수준, 이수학점, 학적상태 등 심사

4. 중복지원 방지

기본 취지

- 등록금 지원유형의 경우는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등록금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 중복 지원 불가)

※ 등록금 범위: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선택경비

중복지원여부 확인

- 장학생 선정 후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중복지원 사유 해소 시 장학금 지급

※ 단, 해당 학기 지급 일정 마감 전까지만 중복지원 해소 인정 및 장학금 지급 가능함

5. 장학금 지급

장학금 유형

- 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

장학금 지급 방식

- 재단은 장학금을 대학별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지정 계좌로 지급, 대학은 장학금을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6. 사후 관리

□ 장학금 환수

○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금액 환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4.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등을 말한다.

□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장학금 반환

○ 장학금 수혜 후 군입대, 질병, 출산, 어학연수,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등으로 휴학, 자퇴, 제적, 타 대학 편입, 재입학, 졸업 등 학적이 변동될 경우, 수혜학기가 초과학기일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장학금 미반환 시, 향후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 할 수 있음

○ 계속장학금의 경우 계속지원 조건 기준(성적 및 이수학점 등)에 미충족될 경우

-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지원중단

※ 단, 계속장학생이 졸업학기인 경우 최소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반환대상 금액

- 장학생이 학적변동 등으로 자격이 상실될 경우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2,600,000\text{원} \times 5/6 = 2,166,666\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2,600,000\text{원} \times 2/3 = 1,733,333\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2,600,000\text{원} \times 1/2 = 1,300,000\text{원}$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반환사유 발생일자 계산은 학기개시일 포함하여 산정

※ 일부 반환의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처리 기준에 준하여 10원 미만의 원단위 절사 처리 가능('22-2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

□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심의를 거쳐 환수 대상에서 제외 여부 결정할 수 있음

□ 장학금 반환 예외 심의(대학 공문 제출 필수)

-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반환기준에 따른 환수가 원칙이나, 본인의 중대한 질병, 사망, 사고, 지진·수해 등 천재지변 등에 의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부금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 대상에서 제외여부 결정할 수 있음

※ 반드시 붙임 파일의 환수·반환 예외처리 신청서(사유 등 기재) 및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대학에서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

7. 자기소개서 심사

심사위원 위촉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자기소개서 심사를 위해 자기소개서 심사위원을 위촉
- 심사위원은 기부처별 평가기준을 근거로 위촉
- 위촉세부계획은 위임전결규칙에 따라 부서장 전결로 위촉

기능

- 기부처별 사업 목적 및 평가기준을 근거로 자기소개서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기소개서 항목을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
- 심사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일 경우 등 제척사유 발생 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평균점으로 대체

임기

-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 사업 종료까지

수당

-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 예산집행관리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기부처 및 재단 내부 위촉 심사위원은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공통사항

선발기준 우선순위

- 기부처별 선발계획에서 정한 사항이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과 상이할 경우, 기부처별 세부 기준을 우선함

발생이자 처리

- 기부장학금 대학지급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학 자체 수입처리

-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3. 소득확인 제출서류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처리 심의 신청서

참고 1

장학생 선발 소득·성적 배점표

□ **가계소득(60점) + 성적(4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60	54	48	42	36	30	24	18	12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40	38	36	34	32	30	28	26	24	22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0	18	16	14	12	10	8	6	4	2

□ **가계소득(50점) + 성적(5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50	47.5	45	42.5	40	37.5	35	32.5	30	27.5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25	22.5	20	17.5	15	12.5	10	7.5	5	2.5

□ 가계소득(30점) + 성적(7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30	27	24	21	18	15	12	9	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70	66.5	63	59.5	56	52.5	49	45.5	42	38.5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35	31.5	28	24.5	21	17.5	14	10.5	7	3.5

□ 가계소득(70점) + 성적(3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70	67	64	61	58	55	52	49	46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30	28.5	27	25.5	24	22.5	21	19.5	18	16.5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15	13.5	12	10.5	9	7.5	6	4.5	3	1.5

□ 가계소득(100점)

○ 가계소득 배점기준

지원구간	0~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10구간
점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 성적(100점)

○ 성적 배점기준

- 성적심사는 성적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신청자 전체 중 상대평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함

성적계산식: (취득평점/평점만점) x 100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평가 점수표]

성비 점율	상위 5%미만	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이상 35%미만	35%이상 40%미만	40%이상 45%미만	45%이상 50%미만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성비 점율	50%이상 55%미만	55%이상 60%미만	60%이상 65%미만	65%이상 70%미만	70%이상 75%미만	75%이상 80%미만	80%이상 85%미만	85%이상 90%미만	90%이상 95%미만	95%이상
점수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참고 2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대상 범위 및 예외사항**

구 분	종 류
학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농어촌 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II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2020년 사업폐지), 국가전문대학우수장학금(2012년 사업폐지), 전문기술인재장학금(2019년 사업신설),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 I 유형), 고졸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 장학금, 직원 및 직원 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국가 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22년 2학기 신규 지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은 생활비 무상보조 유형으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단, 등록금 지원유형 제외)

참고 3

소득확인 제출서류[필수/선택/다자녀]

① 필수서류(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 · 서류징구 기준 · 서류처리대상 ·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심사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22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학생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주1)}		
	생존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폐쇄인정 ^{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실종 증빙 서류 ^{주2)} + 주민등록표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주민등록표초본 ^{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폐쇄인정 ^{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폐쇄인정 ^{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폐쇄인정 ^{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주9)}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주민등록표초본 ^{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폐쇄인정 ^{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9)} + 실종 등 서류 ^{주2)} + 주민등록표등본 ^{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주민등록표초본 ^{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증빙 서류 ^{주2)}		폐쇄인정 ^{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증빙 서류 ^{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표등본 ^{주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 ^{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증빙 서류 ^{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주3)}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1~3일(휴일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앱)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24'(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발급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여권사본,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 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7)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주9)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② 선택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주2)}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기초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주2) 별첨5 참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예시

◇ 다자녀 국가장학금 서류

신청 시 입력한 형제·자매 정보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대법원 가족관계정보를 통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

구분	내용
이혼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후관계단절된 부(모)의 서류를 통해서만 입증되는 자녀는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거나 부 또는 모가 학생의 이복(동복)형제를 부양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양측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혼사실 등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2) 자녀합산을 위한 부(모)·계모(계부)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3) 부양관계 존재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부모 양쪽이 이혼후관계단절된 경우 형제·자매 수 인정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학생이 이복(동복)형제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 가능
재혼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부 또는 계모가 소득·재산조사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모(부), 계부(계모) 양측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 합산*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재혼사실 확인 및 자녀 수 합산을 위하여 부(모)·계모(계부) 가족관계증명서 모두 제출
형제·자매의 사망, 말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학자금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 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폐쇄 등록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형제·자매는 형제·자매 수 합산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전산정보 또는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연계를 통한 정보 확인 가능자는 증빙서류 제출 생략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는 첫 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단, 학생 본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대상자(부모 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는 모두 공개하여 제출)

※ 세부 처리기준은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 참고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증명서		명의	발급기관	비고
1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	주민자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장애인연금수급자는 ‘차상위 부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만 차상위 인정
2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3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종일 경우 만22세 미만)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 보험공단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자
5	차상위 계층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6	수급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참고 4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대학공문 제출 필수)*

장학금 환수·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

인적사항	성 명		대학명	
	전화번호		학과	
	휴 대 폰		E-mail	
	주 소			

장학금 수혜현황	장학금 수혜학기	년도 학기	환수대상금액	원
-------------	-------------	----------	--------	---

환수에외 심의 신청사유	<p><i>(상세히 기술할 것)</i></p>
--------------------	---------------------------

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자 확인 사항	<p>1. 증빙 서류 제출 :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p> <p>2. 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 만일,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p>
--------------	--